

정의로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목 차

● 발간사	4
-------------	---

I. 한국기독교장로회 성윤리 강령	6
--------------------------	---

II. 성폭력 예방과 대처 지침	9
-------------------------	---

1. 목적	9
2. 적용범위	9
3. 성폭력의 정의	9
4. 교회 내 성폭력의 정의	9
- 성희롱의 대표 유형과 예시	11
5.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 다른 심리	12
6. 교회 성폭력의 특성	13

III. 성폭력사건 발생 시 처리지침	15
----------------------------	----

● 최초 상담자 상담 요령	15
1. 교회 혹은 기관에서	16
2. 노회에서	19
3. 총회에서	23
●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25

IV. 주체별 대응 지침 28

- 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침 28
- 2. 제 3자를 위한 지침 30
 - 성폭력 2차 가해란? 30
- 3. 동료와 교회공동체를 위한 지침 31
- 4. 목회자를 위한 지침 33
- 5. 가해자를 위한 지침 33

V.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들 35

- 1. 상담과 심리 지원 35
- 2. 의료 지원 36
- 3. 사회법 법률 지원 37

VI. 부록.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전문기관과 참고자료 39

- ※ 전문기관(상담소 및 의료기관) 39
- 1. 교회 성폭력상담소 40
- 2. 성폭력 상담소 40
- 3.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49
- 4. 참고자료 54
- 5. 사건 해결 지도따라 길 찾기 55
 - [별지 1] 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 양식 57
 - [별지 2] 성폭력 사건 접수 보고서 양식 58
 - [별지 3] 증인 확인서 양식 59
 - [별지 4] 성폭력대책위원회 협의록 양식 60
 - [별지 5] 성윤리 강령 준수 서약서 양식 61

성폭력 없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웁시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성 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서' 「생명다리 이어가기」(2015)에 이어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간 안전하다고 여겼던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였고, 교회나 교단 내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성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선포하였고, 각 교회와 노회에서, 신학생들과 목사수련생 교육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이 성폭력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대처하자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교회, 평화롭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는 결의였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위한 지침이 없어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각 교회와 노회, 총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1부 우리 교단이 제정하고 선포한 '성윤리 강령'을 실었습니다. 수시로 읽고 숙지하여 머리뿐 아니라 몸에 습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성폭력 예방과 대처 지침'을 실었습니다.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성폭력이란 무엇이며, 어떤 말과 행동들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 성희롱의 대표 유형과 예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3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을 실었습니다. 최초 상담자가 진행하게 되는 상담요령, 각 교회와 노회·총회의 사건처리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단계, 성폭력범죄 처리와 해결을 위해 꼭 견지해야 할 것들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실었습니다.

4부 '주체별 대응 지침'을 실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지침, 주변 동료와 공동체, 목회자를 위한 지침, 가해자를 위한 지침을 실었습니다.

5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들'을 실었습니다. 심리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교회 구성원들은 피해자의 고통과 절박함을 함께 느끼는 성인지 감수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록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참고자료'를 실었습니다.

이 지침서를 통해 우리 교단의 성원들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며, 범죄는 단호하게 처리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길 희망합니다.

지난 1년간 이 지침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만들고 수정에 참여한 양성평등위원님들, 성폭력근절을 위한 지침서 준비위원회 위원님들, 임정혁 목사님(한신교육연구소 /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채수지 목사님(기독교여성상담소 /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께 감사합니다. 또한 교단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사건 재판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 지침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위원장 이 혜 진
총회 총무 이 재 천

I. 한국기독교장로회 성윤리 강령¹⁾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 생명, 정의, 평화를 실현하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임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 정의, 평화를 실현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사명의 구체적인 실현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드러나야 하며 이 시대 교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018년 초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미투, 위드유 운동은 오랫동안 있었던 지위나 나이, 힘을 이용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성 평등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담은 성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기장에 속한 모든 신앙인들은 이 강령을 신앙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근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길잡이로 삼을 것이다.

○ 성경적 근거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창1:27)하셨고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롬2:11),(갈3:26-28) 대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을 비롯하여 성(性) 차이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성차별을 부추기는 가부장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동안 지위나 힘을 이용한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것을 방관해왔다. 이러한 교회의 성차별은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했던 잘못을 성찰하고 회개한다.

1)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이 성윤리강령을 결의하였다.

성 윤리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에 있다. ‘네 마음을 다 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막12:30-31)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한다. 성(性)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엡1:23)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은총을 경험하는 장(場)이며, 사랑과 생명, 정의, 평화를 드러내는 곳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롬6:23)이 가득한 교회는 성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 우리의 다짐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성 평등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윤리 강령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강령은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도, 기관과 유관 기관의 모든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양하면서도 동등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며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2. 우리는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평등한 그리스도공동체를 이루어가겠습니다.
3. 우리는 나이나 지위,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피해를 주지 않고,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는 칭찬이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우리는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게 상담을 연결하고, 비밀보장, 치료와 돌봄,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나 신체, 정신,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은 더욱 엄중히 다루겠습니다.
7.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있는 교회공동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잘 돌보겠습니다.

8.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회개하게 하여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9. 우리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기장 내 각 단위 마다 실시하겠습니다. (학부, 신대원, 인턴쉽, 각 노회와 교회)
10. 이를 위해 우리는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교회 성폭력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성 평등의 실현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이러한 은총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갈 것을 성 윤리 강령의 제정과 함께 다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13:10)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요한1서3:24)

II. 성폭력 예방과 대처 지침



성폭력 예방과 대처 지침(이하 지침)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요 원칙이며, 교회와 노회, 총회는 이 내용을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목적

이 지침은 2018년 총회에서 제정된 성윤리 강령의 구체적 실현을 통해,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과 교정,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을 보호하며,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노회와 교회, 기관에 등록된 구성원(목회자와 신도, 기관과 유관 기관의 모든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 포함)에게 적용된다.
- ②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노회와 교회, 기관은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3.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4. 교회 내 성폭력의 정의

* 교회 내 성폭력이란 예배, 목회적 돌봄과 관련업무 등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성도나 동역하는 목회자(목사, 전도사) 혹

은 직원에게 성폭력 또는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회나 기독교기관,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하며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착취하거나 신뢰의 관계를 오용하여 상대방부터의 이점을 얻는 등 기독교의 윤리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한 성적 행위는 모두 성폭력이며 이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 유무와 관계없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에 따른 성폭력의 유형

- ① 강간 :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간음한 행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
- ② 강간 미수 : 강간을 시도했으나 강간죄에 해당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행위
- ③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자신의 성적 욕망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행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
- ④ 성희롱 : 상대방 의사에 관계없이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시각적 자료를 게시 또는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행위
- ⑤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 ⑥ 카메라 등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
- ⑦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 통신과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유포, 폭력, 사진과 동영상 촬영,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⑧ 위에 적시하지 않은 범죄 행위는 사회의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대표 유형

언어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이나 말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행위.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임신, 출산, 피임, 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등
육체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시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매체 전송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 만지는 행위 등
환경형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으로 특징인 또는 공동체의 업무능력,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힘이 있는 자임면, 지위,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등)가 언동을 통해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일하는 환경, 혹은 신앙생활의 환경을 불쾌하고 열악하게 하기 위하여 성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

언어 성희롱 예시 / 아래 세 줄은 성차별 예시

- 우리 ○○씨, 우리 이쁜이. 내 애인이야
-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 아가씨 엉덩이라 탕탱하네.
- 몸매 진짜 좋다.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남자 전도사님이 그거 먹고 힘쓸 수 있겠어요?
- 차는 젊은 여자가 타줘야 제 맛이지... (여자 목사님이 커피 타주니 더 맛있네요.)
- 요즘 왜 이렇게 살찐어? 그러가지고 남친(여친)이 좋아하겠어?
- 믿음이 좋은 청년이 예쁜 자매와 결혼하는 거야.
- 빨리 결혼해서 순풍순풍 애를 낳는 것이 자연 전도입니다.
- 여신도들이 가득하니 꽃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
- 남남북녀야, 여자는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쁘지.
- 찬양팀 여학생들에게 “머느리감을 찾고 있다.”
- 여성은 약하니까, 누가 도와주세요.²⁾
- 자신의 첫 목회지를(그냥 첫 목회지라 말하지 않고) ‘처녀 목회’ 라고 설명하는 것.

2)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성차별 발언 피해’ 설문조사 참조, 2019.

육체적 성희롱 예시

- 격려한다고 어깨를 두드리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허리에 손 두르는 행위
- 손으로 엉덩이를 톡톡치는 행위
- 친한 척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 입맞춤, 혹은 손에 입맞춤하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2차 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일하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하는 행위
- 자신의 무릎에 억지로 앉히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악수를 하며 상대의 손바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 등

5.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 다른 심리³⁾

	피해자	가해자
성적 표현	성적수치심으로 느낌	친근함을 표시한 것
성적 농담	비상식적 언어표현으로 감정이 상하고 수치심 느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함
이성 동료에 대해	이성보다는 동료로 생각	동료보다는 이성으로 생각
성희롱 발생 시	인격적 모독!	그럴 수도 있지!
문제제기하는 경우	이렇게라도 내 감정을	괜한 문제를 일으킨다. 너무 예민하다.
가해자 처벌	당연한 일!	뭘 그렇게 까지 해!

3) 2019 총회교육원 포괄적 차별예방 계속교육 <젠더감수성 교육> 에서, 임정혁

6. 교회 성폭력의 특성

신앙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특성과 유형이 사회의 성폭력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 지침서에서 말하는 교회 성폭력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 신학교 등 기독교 신앙을 매개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폭력을 포함한다. 이는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동료 목회자(부목사, 전도사 등)에게 행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말한다. 교회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정의나 유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의 교회 성폭력 사례를 근거로 정리한 교회 성폭력의 특성과 유형을 바탕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

- (1)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와 교사 등 교회 지도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쌓아온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교회 지도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하게 된다.
- (2)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 자신을 영적인 부모로 칭하며, 자신의 행위를 성적인 행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식으로 성폭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3)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 목회자의 속임수와 ‘영적 길들임’으로 인해 목회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목회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주의 종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믿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폭력은 대부분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처럼 보이는 형태를 띠게 된다.
- (4) 교회 성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중재과정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 법적 해결은 매우 어렵다. 교회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문제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정서는 그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4)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교회성폭력 예방 지침서』 (여성신학사, 2018), 28-48.

- (5) 교회 성폭력은 처리과정에서 교회의 분파 싸움에 휩쓸려 피해자의 인권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사실이 드러난 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사탄 마귀라고 정죄되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분파에 휘말려 이용되다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6)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피해대상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가 다양한 교회활동을 통해서 지속되며, 가해자인 목회자는 피해자들을 길들여 성폭력을 신앙의 행위로 이해하도록 하여 저항하지 않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기 때문이다.
- (7) 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영적인 어려움까지 추가되어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보다 더 심각하다. 믿고 순종하던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주의 종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주의 종을 용서하라는 주위의 강요가 있기에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거나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좌절하기도 한다. 신앙에 대한 회의로 교회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 (8) 교회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과 종교적 삶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공동체를 파괴한다.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거의 대부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한다. 교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옹호하는 그룹으로 나뉘고, 교회공동체는 분란에 쌓이게 된다. 교인들도 서로 불신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III. 성폭력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



최초 상담자 상담 요령⁵⁾

1. 상담 신청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요구를 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상담 신청자가 편안해 하는 공간을 정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언론이나 기타 인물 등이 접근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2. 상담 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여기서 나누는 상담내용이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유한다.
3. 상담자와 상담 신청자의 신뢰가 충분하거나 구체적인 상담요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담 신청자와 같은 성별의 상담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 도중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상담자는 상담 신청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상담 신청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답과 진술을 강요하거나 채근해서는 안 되며, 편안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상담자는 상담 신청자가 설명하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담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안내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 상담자와의 상담을 기초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결정하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담 신청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을 통하거나 녹음이나 속기하여 기록을 보존한다.
7. 상담 신청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더욱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매우 긴 호흡으로 천천히 상담에 임해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호자나 대리인이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임정혁 목사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지침라인>(2019)

8. 상담은 피해자-상담 신청자의 입장과 상황을 파악하는 초기단계로서 상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구제 절차의 전 과정을 숙지한다.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과 사건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능력까지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듣는다.
- ② 피해자의 안정을 돕는다. : “당신 탓이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등의 말로 안정을 돕는다.
- ③ 상담자는 자신이 전문가가 아님을 인지하고, 피해자 의사와 별도로 사건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
- ④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양한 통로를 소개한다.
- ⑤ 피해자가 결정하기까지 독촉하지 않고 기다린다.
- ⑥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 ⑦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다양한 해결 통로를 소개한다.
- ⑧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
- ⑨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교회 혹은 기관에서⁶⁾

1)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교회나 각 기관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원활한 사건 처리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는 외부인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피해자와의 같은 성(性)의 위원이 반드시 절반이 넘도록 구성한다.

6)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교회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지침안>을 참고하였습니다.

2) 사건 인지단계 (성폭력 사건 상담과 접수 시)

- ① 피해자와 행위자(가해자)를 긴급 분리하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 ② 상담원은 상담, 조사과정에 있어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자격 : 성폭력 신고를 최초 접수하는 상담원은 최소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 상담원’교육 100시간을 이수하고 성폭력 상담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약 전문상담원이 없으면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의뢰하거나, 노회 또는 총회에 상담원 파견을 요청한다.)
- ③ 성인 피해자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또는 성폭력 특례법상 처벌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인지 즉시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알려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법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와 1:1로 만나기보다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⑤ 상담내용과 상담 신청자의 개인 신상은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조사 신청서를 작성한다.
- ⑥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이 어려울 때는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조사 신청서와 접수보고서를 낸다.
- ⑦ 피해자를 지원한다. (전문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법률, 의료지원)
- ⑧ 임시조치 : 목회자 또는 장로가 가해자인 경우 사건 심의 결정 시까지 즉시 목회와 선교, 교회 활동을 중지하도록 한다. 사건 심의 결정 시까지 자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후 사직서를 처리한다. 또한 피해자 등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시행한다.(가해자가 신도일 때에도 예배와 교회 활동 금지, 피해자 등과 접촉금지 조치를 취한다.)

3) 성폭력대책위원회 진상조사와 심의

- ① 피해자의 피해 사항과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상담원과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조사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가 원할 시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 의해 작성된 1차 진술서를 채택하거나 변호인이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다. 고소장 외 최종설 명서는 경찰 조사 시 진술서 / 성폭력 상담원에게 한 진술서로 대체 가능하다.
- ② 증인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행위자를 소환하여 조사한다. 행위자를 면담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면담한다. 행위자에게 사건의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고지하여 추가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 ④ 사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회나 교회, 기관을 대표하는 공적모임에 보고한다.
- ⑤ 모든 조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최소 20일 이내에 완료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⑦ 모든 절차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원칙으로 한다. 목격자나 제3자에게 비밀 유지의 원칙을 공지하고 상담원, 조사위원, 대책위원들은 사건의 관계자 개인 신상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징계

- ①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와 심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 ②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
 - 가) 가해자가 목사일 경우 : 심의결과를 당회와 공동의회(기관일 때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노회에 심의결과를 제출하여 징계를 요청한다.
 - 나) 가해자가 장로 등 교회 직원일 경우 : 심의 결과를 당회와 공동의회(기관일 때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공개하고 교회(기관) 차원에서 징계 정도를 논의하고 징계한다.

- ③ 심의와 징계 결과를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한다.

5) 종결과 조치 이행

- ① 가해자를 조치한다. 또한 가해자의 교정 과정을 함께 병행한다.(성폭력 예방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등)
- ② 당회, 공동의회(기관일 때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노회에 보고한다.
- ③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 병원 연결)
- ④ 피해자가 목회자나 직원일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근무부서 변경과 배치 전환 등의 요구 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 ⑤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 외 기타 필요한 교육 강화, 공동체 문화개선,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를 지속한다.
- ⑥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관계치유를 위한 과정을 준비하여 진행한다.

2. 노회에서

1)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노회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원활한 사건 처리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홀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는 외부인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피해자와의 같은 성(性)의 위원이 반드시 절반이 넘도록 구성한다.

2) 사건 인지단계 (성폭력 사건 발생 접수를 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회로 했을 때)

- ① 피해자와 행위자(가해자)를 긴급 분리하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 ② 상담원은 상담, 조사과정에 있어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자격 : 성폭력 신고를 최초 접수하는 상담원은 최소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 상담원’교육 100시간을 이수하고 성폭력 상담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 ③ 성인 피해자: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또는 성폭력 특례법상 처벌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인지 즉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법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당사자와 1:1로 만나기보다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⑤ 상담내용과 상담 신청자의 개인 신상은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조사신청서를 작성한다.
- ⑥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때는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조사 신청서와 접수 보고서를 낸다.
- ⑦ 피해자를 지원한다.(전문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법률, 의료지원)
- ⑧ 임시조치 : 목회자 또는 장로가 가해자인 경우, 사건 심의 결정 시까지 즉시 목회와 선교, 교회 활동을 중지하도록 한다. 사건 심의 결정 시까지 자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후 사직서를 처리한다. 또한 피해자 등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시행한다.

3)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진상조사와 심의 :

(지 교회 당회나 공동의회(기관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결의로 가해자 징계 요청할 경우)

- ① 해 교회(기관)의 진상 조사와 심의 결과를 검토한다.
- ② 증인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행위자를 소환하여 조사한다.(피해자의 경우 1차 진술서를 채택하거나 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다. 고소장 외 죄증설명서는 경찰 조사 시 진술서 /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진술서로 대체 가능)
- ④ 사건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 사안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정치부에서 논의하여 기소할 수 있으며 노회에서 곧바로 재판국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임무 ①~④를 재판국에서 진행한다.)

4)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진상조사와 심의

(피해자나 대리인에 의해 직접 사건을 접수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 해 교회나 기관의 지도자일 경우 해 당회나 이사회 등을 경유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부전지를 붙여서 제출할 수 있다.

- ① 피해자의 피해 사항과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상담원이 조사와 심의에 참여한다. 이 때 피해자가 원할 시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 의해 작성된 1차 진술서를 채택하거나 변호인이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다. 고소장 외 죄증설명서는 경찰 조사 시 진술서 / 성폭력상담원에게 한 진술서로 대체 가능하다.
- ② 증인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행위자를 소환하여 조사한다.(피해자의 경우 1차 진술서를 채택하거나 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다. 고소장 외 죄증설명서는 경찰 조사 시 진술서 /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진술서로 대체 가능)

④ 사건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 사안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정치부에서 논의하여 기소할 수 있으며 노회에서 곧바로 재판국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임무 ①~④를 재판국에서 진행한다.)

5) 노회의 처리와 징계

① 노회 임원회는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죄과가 확인되면 노회장이 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소를 결정한다.

② 기소와 함께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한다. 재판국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홀수로 구성한다. 재판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는 외부인도 가능하다. 재판국원은 피해자와의 같은 성(性)의 위원의 절반(최소 1/3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성폭력에 관한 범죄의 재판은 본 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징계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가) 가해자가 목사나 장로일 경우 :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징계나 처리는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하며, 1, 2, 3, 단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1단계 : 성적 모욕과 희롱 - 근신 이상, 2단계 : 성추행과 사이버 성폭력 - 시무정지 이상, 3단계 : 미성년자나 장애인, 친족 대상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강간 미수 이상의 사건 - 면직과 출교)

나) 가해자가 기타 직원이거나 신도일 경우 :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하고, 노회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성폭력 정도에 따라 징계한다.)

⑤ 가해자의 교정 과정을 함께 병행한다.(성폭력 예방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등)

⑥ 모든 절차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원칙으로 한다. 증인이나 제3자에게 비밀 유지의 원칙을 공지하고 임원, 정치부원, 기소위원, 재판국원 등 사건 처리의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수준의 사례 또는 정보를 노출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6) 종결과 조치 이행

- ① 가해자를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 ② 성폭력 이력 목회자의 이명, 청빙 과정에서 해당 교회에 반드시 목회자의 성폭력 관련 사실의 정보 제공을 한다.
- ③ 성폭력의 행위자인 목회자가 타노회 또는 타교단으로 전출 시 해당 노회와 교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피해자가 목회자나 직원일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근무부서 변경과 배치 전환 등의 요구 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 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 외 기타 필요한 교육 강화, 공동체 문화개선, 꾸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를 지속한다.
- ⑥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관계치유를 위한 과정을 준비하여 진행한다.
- ⑦ 모든 노회원은 성윤리 강령 서약서를 작성하고 노회에 보관한다.

3. 총회에서 (상소할 때)

1) 총회의 재판

※ 해 교회나 기관의 지도자일 경우 해 당교회나 이사회, 시찰회, 노회 등을 경유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부전지를 붙여서 제출할 수 있다.

- ① 해 노회의 재판 서류를 검토한다.
- ② 기소위원회는 상소장을 검토하고 기소를 결정한다.

- ③ 총회재판국은 피해자와의 같은 성(性)의 위원 1/3 이상을 반드시 추가하여 구성한다. 재판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는 외부인도 가능하다. 성폭력대책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④ 성폭력에 관한 범죄의 재판은 본 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 ⑤ 재판 결과에 따라 해 노회를 통해 처리하거나 징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가) 가해자가 목사나 장로일 경우 :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총회에서 통과되기 전일때 징계나 처리는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하며, 1, 2, 3, 단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1 단계 : 성적 모욕과 희롱 - 근신 이상, 2단계 : 성추행과 사이버 성폭력 - 시무정지 이상, 3단계 : 미성년자나 장애인, 친족 대상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강간 미수 이상의 사건 - 면직과 출교)
 - 나) 가해자가 기타 직원이거나 신도일 경우 :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하고, 노회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성폭력 정도에 따라 징계한다.
- ⑥ 모든 절차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원칙으로 한다. 목격자나 제3자에게 비밀 유지의 원칙을 공지하고, 기소위원, 재판국원, 실무자 등 사건 처리의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종결과 조치 이행

- ① 가해자를 노회를 통해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가해자에게 교정과정을 병행했는지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성폭력 이력 목회자의 이명, 청빙 과정에서 해당 교회에 반드시 목회자의 성폭력 관련 사실의 정보제공을 한다.
- ③ 성폭력의 행위자인 목회자가 타노회 또는 타교단으로 전출 시 해당 노회와 교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총회원들의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채택한 성윤리 강령의 구현의지를 분명히 한다. 성폭력 근절과 예방은 지속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구체적인 의지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노회와 총회는 모든 노회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을 연초에 계획하고, 1년에 1회 이상 교육 해야 하며, 노회는 총회에 이를 알린다. 총회는 가을노회 이 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의무 교육 이행 확인)

1.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노회와 총회 관계자는 신고인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적인 의견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노회와 총회는 성폭력 신고인이 지 교회를 신뢰하지 못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사안이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지침대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주저함이나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 자체가 신고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3. 노회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있으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을 때 사안이 접수되면 위원을 위촉하여 이를 가동한다.
4. 노회와 총회는 재판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 이성교제, 합의에 의한 관계 등으로 성폭력 주장을 부정할 때, 이를 가해자 측에서 증명해 내야하며, 그렇지 못 한 경우 피해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피해자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피해자에게 교회의 평화를 운운하며 가해자에 대한 이해나 용서를 강요하지 않는다.
7.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고지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한다.

8. 가해자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만일 재발될 경우 어떤 절차와 치리가 존재하는지 상기시켜 준다.
9. 가해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여 교정과 자숙을 지켜보며 지원한다.
10. 가해자가 선불리 공동체에 복귀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내부의 지침을 마련하되,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재범방지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권면한다.
11. 노화와 총회는 재판 결과를 가-피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결과 통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까지 온전히 절차와 조치가 정당해야 한다.
12. 노화와 총회는 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나 개별사건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우리 공동체 내부의 인식, 시스템 등의 한계나 모순이 집약된 것임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의 집행과 보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13. 노화와 총회는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신분상실 또는 업무, 인사 상의 불이익 조치
 - ②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③ 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④ 노회의 이명이나 청빙에 있어서의 불이익 조치
 - 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괴롭힘 행위
14. 노화와 총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① 피해자와 가해자의 선부른 화해중용과 사건 종결 시도
 - ②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조치를 지정하거나 단일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③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④ 피해자 등이 사건을 유발하였다는 논리의 유포

- ⑤ 피해자 등의 과거 경력, 성격, 태도, 사생활, 신학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⑥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 출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⑦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성교제, 사랑 등으로 규정하여 유폐하는 행위
 - ⑧ 교육, 저술 등 일체의 범주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 ⑨ 기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15. 총회와 노회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온전한 처리 관련 제도의 정비와 실행이 곧 공동체의 보존에 직결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조직의 보위나 개인의 친분을 먼저 생각하여 사건을 온전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가 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IV. 주체별 대응 지침



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침

✧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⁷⁾

- (1) 성희롱·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절대로 피해자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 (2)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분노와 불쾌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조력인, 전문 상담가 등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 (3)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조력인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가급적 총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4) 사건 접수를 할 때 피해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성폭력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 전달은 이후 법적, 제도적 절차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의나 합의, 허락 여부 등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가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 표현을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 (6) 신체적 상해 등이 발생한 성추행 이상의 사건이나 성폭행 등이 발생하면 샤워를 하지 말고 입은 옷 그대로 상담소, 병원, 원스톱 지원센터, 경찰 등을 방문하거나 최대한 천천히 옷을 정리하여 종이봉투에 잘 보관한 후 이동합니다(증거물질이 떨어지거나 닦이면 안 됩니다).
- (7) 사건처리를 진행하는 동안 행위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변동과 공간분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임정혁 목사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지침라인>(2019)

- (8) 4대 보험이 적용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법적 근로자 지위를 확보한 목회자와 직원의 경우 현행법에 의거한 구제절차를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 (9) 피해자가 행위자의 가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 게시 또는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10) 성폭력 피해자는 고용상의 또는 그 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경험했다면 기존 업무 또는 일상과 달라진 점을 기록하고 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정리해둡니다.
 - (11) 법적 근로자 지위를 확보한 목회자나 교회 직원의 경우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직장 내 성희롱을 산재 처리한 사례가 있고 산업안전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산재처리가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 (12) 사안에 따라 언론에서 취재를 올 수도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언론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모아둡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내 목소리가 들어있다면 상대방의 구체적 동의나 합의가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5쪽, 56쪽 사건 해결 지도 따라 길찾기 1단계, 2단계 그림을 참조하세요.)

(1) 개인적 해결

→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정리 → 가해자 대면 준비 → 가해자와 만남 또는 통화

※ 주의할 점 :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면 가해자로부터 협박 또는 회유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또다시 무력감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

(3) 소속 집단 안의 해결

2. 제 3자를 위한 지침

✧ 성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 / 들었을 때

- (1)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 (2) 2차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3)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상담(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지금 상담(혹은 신고)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사건 후 수치심과 모멸감, 분노, 자책 등의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 살아갑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해 행위자가 과거 자기에게 행했던 행동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될 때 과거 자신의 피해 경험과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신고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 지금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나도 가해자의 공범자가 되겠구나’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이나 신고를 결심하게 됩니다.

성폭력 2차 가해란?

성폭력 사건발생 이후 소속교회, 시찰회, 노회, 학교, 교단, 사법 및 의료기관 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지원단체, 변호인 등에게 보이는 부정적 반응으로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형

피해자에게 책임 씌우기, 피해자 신상 유포, 사건을 가십거리로 삼는 행위,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피해자나 지지자, 조력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피해자의 지지자나 조력자를 음해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와의 인간관계가 겹치는 경우 반복진술, 서로 좋아해서 생긴 일이라며 의심, 악의적 소문,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 화해를 종용하는 것, 여성신학이나 여성학을 수학했기 때문 등의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 ① 피해자 등과 행위자의 선부른 화해종용과 사건 종결 시도
- ② 피해자 등에게 앞으로의 조치를 지정 또는 단일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③ 피해자 등의 신상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④ 피해자 등이 사건을 유발하였다는 논리의 유포
- ⑤ 피해자 등의 과거 경력, 성격, 태도, 사생활, 신학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⑥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 출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⑦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행위자와의 관계를 이성교제, 사랑 등으로 규정하여 유포하는 행위
- ⑧ 교육, 저술 등 일체의 범주에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 ⑨ 기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3. 동료와 교회공동체를 위한 지침

- (1) 교회 내 성폭력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와 가까운 관계의 동료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으므로 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측의 말을 옮겨서도 안 되고, 동시에 양측을 만나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2) 가해자의 지인일수록 평소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 (3) 피해자와 연대하며 함께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임을 기억합니다.
- (4) 성차별적이고 성적 굴욕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이가 있을 때 직접 제지하지 못 했음을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간적이고 돌발적인 언행까지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 (5)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진지한 모습으로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 하신 거죠?’ 등의 질문을 통해 잘못된 발언을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내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6)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함부로 신고인-피신고인에 대한 험담, 비난, 사생활, 신학, 사상 등에 대한 평가나 폄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7) 피해자에 대한 동정과 염려로 연락을 자주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상황을 반복적으로 회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왜 그 때 신고하지 않았느냐’와 같은 표현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8) 참고인, 목격자로서 출석이나 진술을 요청받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충분히 설명 하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합니다.
- (9) 신고인에게 도움을 요청받는 경우 심리적 지지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필요 정보(충청 처리 절차, 관련 법령 등)를 함께 찾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상의하는 것, 찾아가야 할 곳에 동행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 (10)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조직을 재점검 해봐야 할 공적인 문제임을 인식합니다.
- (11) 어떤 상황에서도 성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고 피해자는 절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차 가해로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 (12) 교회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상담, 교육, 지지그룹 또는 치유과정을 소개합니다.
- (13) 교회는 피해자의 돌봄과 회복을 돕고 해당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위자(가해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처벌과 궁극적으로 잘못이 교정될 수 있는데 까지 이르려야 합니다.
- (14) 사건 관련자들이나 다른 교우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회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4. 목회자를 위한 지침

- (1)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나 사회복지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둡니다.
- (2) 교회 내 성폭력 대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 (3)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다른 구역, 셀, 부서, 소속 등)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교회 출석에 대한 휴식을 권고합니다.
-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5) 추가적인 성폭력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합니다.
- (6)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진정한 회개와 사과)을 요구합니다.
- (7) 목회자 자신이 성폭력 문제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면 다른 목회자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해자를 위한 지침

- (1)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칭찬이나 애정표현으로 한 언행도 상대방은 불쾌할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이 없어도 성폭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이 행사된 동의나 합의, 허락입니다.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3) 평소 음담패설 등을 가벼운 농담처럼 여기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겠다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사건 발생 시 사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선 경청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사건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5) 빨리 사과하여 사건을 일단락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조건 없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 (6)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인 듯이 몰아가며 역고소를 하거나, 사랑에 의한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을 더 키울 뿐입니다.
- (7) 가해자가 사과를 했어도 피해자는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의 의무입니다. 아울러 소속 교회나 단체에 신속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밝히고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8)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재발의 위험이 없도록 가해자를 교육하는 성폭력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V.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들

의료/법률/상담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1. 상담과 심리 지원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거나 잠을 자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안정을 취하며 건강해 보이다가도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 무언가에 자극을 받거나 노출이 되면 불안에 휩싸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 ①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피해 경험에 대해 경청하고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폭력 경험을 그대로 믿어주십시오.
- ③ 피해자는 “그 상황을 유발했다거나 부주의 했다가나 그 곳에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다”는 등 원인과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어떤 경우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이야기 해줍니다.
- ④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⑤ 성폭력이나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본인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⑥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 ⑦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특히 처리 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치유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피해자가 원하는 데로 잘 처리가 되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후 대처와 해결이 중요합니다.

- ⑧ 성폭력 치유는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⑨ 피해자가 후유증을 극복하여 건강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를 파악하고 도움을 줍니다.
- ⑩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십시오.
- ⑪ 비밀보장과 신분노출을 꺼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피해자보다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늘 피해자의 마음을 살피고 보폭을 맞추십시오.
- ⑫ 피해자에게 자세한 것을 먼저 묻지 마십시오. 피해자가 먼저 말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나는 염려해서 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명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명을 상대하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 ⑬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돕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2. 의료 지원

신체적 상해 등이 발생한 성추행 이상의 사건이나 성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찰은 치료와 증거보전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상처가 생기거나 성병을 앓을 수 있어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한 충격으로 심리 불안이 올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특히 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자가 몸속에서 살아 있는 시간이 72시간입니다. 샤워를 하지 말고 입은 옷 그대로 상담소나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거나 병원 등을 방문합니다. 최대한 천천히 옷을 정리하여 종이봉투에 잘 보관한 후 이동합니다(증거물질이 떨어지거나 닦이면 안 됩니다).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합니다.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는 몸에 난 상처를 살펴봅니다. 손톱 밑 등을 검사하여 가해자의 혈액이나 이물질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기 내 외부를 검진합니다. 치료와 증거확보를 위함입니다. 혈액 채취, 소변 검사, 임신여부도 확인합니다. 증거채취와 검진을 할 때는 피해 당사자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사회법 법률 지원

법률 지원

성폭력전문상담기관(해바라기센터, 1366, 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등)에서 법률 지원, 변호사 선임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성추행부터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강제추행과 강간의 경우 10년이며, 강간치상은 15년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또한 DNA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가해자들의 역고소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성폭력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남성중심적 언어에 대해 온 몸과 마음으로 맞서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고소를 결심하면 제일 먼저 이것이 성폭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와의 확신에 맞서야 하고) 다음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짜 성폭력'을 요구하는 각종 질문과 불신에 맞서 성폭력 통념과 싸워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거나,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의 화살로 다가오고 곧이어 ‘꽃뱀’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성폭력 사건의 판도가 뒤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가 되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는 고소들을 ‘성폭력 역고소’라고 부릅니다.⁸⁾

성폭력 역고소는 가해자가 피소 이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위증, 협박, 모욕, 공갈, 강요죄 등 그 수단은 다양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고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합니다.

8) 출처 : <https://stoprape.or.kr/716> [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VI. 전문기관 / 참고 자료



※ 여성긴급전화 : 1366(국번 없이)

1년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지원 제공. 전국에 지부 있음.

※ 해바라기센터

- 서울센터(서울 송파구) : 02-3400-1117
- 보라매센터(서울 동작구) : 02-870-1700
- 인천센터(인천 동구) : 032-582-1170
- 충북센터(충북 청주시) : 043-272-7117
- 전북센터(전북 전주시) : 063-278-0117
- 경북센터(경북 안동시) : 054-843-1117
- 대구센터(대구 서구) : 053-556-8117
- 광주센터(광주 동구) : 062-225-8117
- 대전센터(대전 중구) : 042-280-8436
- 경기센터(경기 수원시) : 031-216-1117
- 경기북부센터(의정부시) : 031-874-3117
- 경남센터(경남 창원시) : 055-245-8117
- 제주센터(제주 제주시) : 064-749-5117
- 충남센터(충남 천안시) : 041-567-7117
- 전남센터(전남 순천시) : 061-727-0117

1. 교회성폭력상담소

1)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 상담전화 : 02-2266-8275
- 홈페이지 : www.8275.org

2)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사무국 전화 : 02-364-1994
- 상담 전화 : 02-365-1994
- 이메일 : talktome@yourvoice.or.kr
- 홈페이지 : yourvoice.or.kr

3) 기독 여민회

- 상담전화 : 02-312-7955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4) 한신교육연구소

- 상담전화 : 010-4652-7640
- 이메일 : hansinedu@naver.com
- 홈페이지 : www.hansinedu.com

2. 성폭력 상담소

1) 서울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 02-3156-5463
- 탁틴 내일 청소년 성폭력상담소 : 02-338-8043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2890~2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739-8858
- 휴샘통합운영상담센터(통합) : 02-2664-1366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 070-8128-1366
- 벨엘케어상담소 : 02-896-0401,
- 꿈터성폭력상담소 : 02-6083-4971~2
- (통합)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 02-953-1704
- 꿈과희망상담센터 : 02-834-1366
- 행복한생명나무상담센터 : 02-824-4007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02-825-1272
- 이레성폭력 상담소 : 02-3281-1366
- 서초성폭력상담소 : 02-599-7606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 다미안성폭력상담소 : 02-2248-5504
-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 02-902-3356
-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02-3013-1399
- 한사회장애여성성폭력상담센터 : 02-2658-1366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2-3675-4465

2) 경기

-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통합) : 031-232-7795
- 수원탁틴내일상담소 : 031-251-1516
-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 031-751-2050
- 부천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 032-328-9713

-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 032-655-1366
- (사)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부천시회 부설 새부천성폭력상담소 : 032-612-1191
- 용인성폭력상담소 : 031-281-1366
-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 031-413-9414
- 안산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 : 031-419-1142
- 가톨릭여성상담소 : 031-415-0126, 031-415-0117
- 정다운여성권익상담소 : 031-439-1366
- 안양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 031-442-5385 031-466-1366
- 새남심리상담연구원부설 성폭력상담소 : 031-381-8540
- 평택성폭력상담소 : 031-618-1366 031-658-6614
- 광명YWCA부설성폭력상담소 : 02-2619-8928 02-898-0731
-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031-396-0236
-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 031-797-7031
- 로템여성폭력상담소 : 031-764-0577, 031-764-4577
-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 031- 676-1366
-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 031-796-1274
- 고양성폭력상담소 : 031-907-1003, 031-907-5009
- 한마음가족상담센터 : 031-979-1367
- 남양주 가정과 성상담소 : 031-558-1366
- 한국성건강센터 : 031-858-1366
- 동두천성폭력상담소 : 031-867-3100
- (사)사랑깊은돌 부설 경기북부의정부 성폭력상담소 : 031-876-7544, 031-876-7546
- 하나성폭력상담소 : 031-852-0142, 031-853-4563
- 파주성폭력상담소 : 031-946-2096 031-946-0396

- 양주성폭력상담소 : 031- 864-7545~6 031- 875-2033
- 포천가족성상담센터 : 031-542-3171
- (사)해피패밀리포천지부 성폭력상담소 : 031-531-2821
- 연천 행복뜰 상담소 : 031-832-1317
- 행복드림가정상담센터 : 031-641-0675
-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31-755-2526~7
- 의왕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 031-462-1366
-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31-840-9203~4

3) 부산

-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 051-583-7735
- 성가정폭력상담소 : 051-817-6464, 6474
-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051-558-8832~3
-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 051-753-1377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 051-624-5584
- 기장열린상담소 : 051-531-1366

4) 대구

- 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 053-566-1900
- ②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대구성폭력상담소 : 053-471-6484
- ③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 053-745-4501
- ④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 053-637-6064

5) 인천

-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성, 가정폭력상담소 : 032-865-1365
-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 032-451-4091~2
-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32-424-1366
-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32-506-5479

6) 광주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62-521-1366
- 어등 성폭력상담소 : 062-946-8004
- 참사랑 성폭력상담소 : 062-954-4236
- 인구협회광주 성폭력상담소 : 062-673-1366
-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 062-654-1366
- 광주여성의전화광주 성폭력상담소 : 062-363-0485
- 참터 성폭력상담소 : 062-368-5119

7) 대전

-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42-637-1366
- 대전성폭력상담소 : 상담: 042-712-1367. 1369
-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 042-254-3038~9
-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42-223-8866

8) 울산

- 법률구조법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 052-245-1366
-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 052-265-5570

-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52-246-1368
-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 052 252 6778

9) 세종

-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 044-862-9191
-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 : 044-850-3095

10) 강원

-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033-257-4687
-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 033-765-1366
-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033-652-9555
-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033-535-4943
- 사)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 033-637-1988
- 삼척종합사회복지관부설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 033-573-9168
- 영월성폭력상담소 : 033-375-1366
- 아라리가죽성상담소 : 033-563-8666

11) 충북

- 사)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 043-252-0968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43-224-9414
-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 043-263-2000
-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 043-268-3007
- 제천성폭력상담소 : 043-652-0049, 653-1331
-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 043-743-1366

- 충주성폭력상담소 : 043-845-1366
- 한스심리상담센터 : 043-422-3004

12) 충남

- 충남성폭력상담소 : 041-564-0027
-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 041-561-0303
-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41-592-6500
-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 041-852-1950
- 대천성폭력상담소 : 041)931-1366
- 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터 : 041-546-9191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 041-541-1514
-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 041-541-0119
- 당진성상담센터 : 041-354-2366
- 우리상담센터 : 041-752-9911
- 부여성폭력상담소 : 041-837-1366
- 서천성폭력상담소 : 041-956-8255
-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 041-631-3939
- 예산 성폭력 상담소 : 041-335-1311
-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 041-675-9536

13) 전북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성폭력상담소 : 063-236-0152
-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63-223-3015
- 군산성폭력상담소 : 063-445-1366

- 익산 성폭력상담소 : 063-834-1366
-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 063-537-1366
- 남원YWCA부설성폭력상담소 : 063-625-1316
- 남원성폭력상담소 : 063-635-0712
- 로템성폭력상담소 : 063-445-9192
- 전주다솜성폭력상담소 : 063-223-5683
-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 063-536-1369
- 호남성폭력상담소 : 063-286-1366
-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 063-546-8366

14) 전남

- 목포여성상담센터 : 061-285-1366
-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61-283-4767
- 여수성폭력상담소 : 061-666-4001
- 전남성폭력상담소 : 061-755-8033
- 나주여성상담센터 : 061-332-1366
- 담양인권지원상담소 : 061-381-1366
- 해남성폭력상담소 : 061-533-9181
- 무안여성상담센터 : 061-454-1360
- 보두마상담센터 : 061-324-1388

15) 경북

-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054-284-0404
-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 054-277-9540

- 경주다움 성폭력상담센터 : 054-777-1366, 054-777-1520
-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54-843-1366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 054-463-1386, 054-463-1388
-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54)443-1366
-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 054-534-5999
- 문경열린종합상담소 : 054-555-8207
- 로템성폭력상담소 : 053-853-5276
- 새경산성폭력상담소 : 053-814-1318
- 칠곡종합상담센터 : 054-973-8290

16) 경남

- 창원성폭력상담소 : 055-283-8322
-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055-247-1366
-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 055-244-8400
- 진해성폭력상담소 : 055-546-8322
- 동산샘상담소 : 055-277-6868
- 진주성폭력상담소 : 055-747-1366
-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 055-648-2070
- 사천성가족상담센터 : 055-852-9040
- 김해성폭력 상담소 : 055-329-6451
- 양산성가족상담소 : 055-366-6663
- 함안성 가족상담소 : 055-587-1367
-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 055-521-1366

- 하동성가족상담소 : 055-884-1360
- 거창성가족상담소 : 055-944-1828

17) 제주

- 제주여성상담소 : 064-755-1366
- 제주YWCA 통합상담소 : 064-748-3040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064-753-4980

3.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1) 서울

- 서울대학교병원 2072-2200 종로구 대학로 103
- 국립중앙의료원 2260-7114 중구 을지로 245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709-9114 용산구 대산관로11길 50
- 조은산부인과 2282-3088 성동구 독서당로 335
- 한양대학교병원 2290-8114 성동구 왕십리로 222
- 건국대학교병원 2030-7124 광진구 능동로 120-1
-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958-2319 동대문구 왕산로 180
- 시립동부병원 920-9204 동대문구 무학로 124
- 동대문구보건소 2127-5365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고려대안암병원 920-5849 성북구 인촌로 73
- 아가엄마 산부인과 999-8275 강북구 한천로 1041
- 한일병원 901-3252 도봉구 우이천로 308

2) 부산

- 부산대병원 :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 융합의학연구동 6층 (49241)
T. 051-244-1375 F.051-244-1377
- 부산동부 : 부산의료원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47527)
T. 051-501-9117 F.051-506-4117

3) 대구·경북

- 대구의료원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2(동인동2가 244-1) 2,3층 (41944)
T. 053-421-1375 F.053-421-1370
- 경북대병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2 2,3층
T. 053-421-1375 F.053-421-1370

4) 인천

- 가천대 길병원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21556)
T. 032-423-1375 F.032-432-1375
- 인천동부 : 인천의료원 :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22532)
T. 032-582-1170 F.032-582-1179
- 인천북부 :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21431) T. 032-280-5678 F.032-280-5677

5) 광주·전남

- 광주 : 조선대병원 :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61453)
T. 062-225-3117 F.062-234-3117

- 전남대병원 :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61486)
T. 062-232-1375 F.062-232-1375

6) 대전

- 충남대병원 :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35015)
T. 042-280-8436 F.042-280-8434

7) 울산

- 울산병원 :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44686)
T. 052-265-1375 F.052-244-6117

8) 경기도

- 경기남부 : 아주대병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 도병원약국 3층 (16502) T. 031-217-9117 F.031-217-5198
- 아주대병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2층 (16502)
*별관 : T. 031-215-1117 F.031-214-9373
응급 : T. 031-216-1117 F.031-216-1109
- 의정부의료원 :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11671)
T. 031-874-3117 F.031-872-4117
- 경기서부 : 한도병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6 한도병원 제2별관 2층 (15367) T. 031-874-8117 F.031-365-5222
- 경기북서부 : 명지병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10497)
*통합 : T. 031-816-1375 F.031-816-1399)
응급 : T. 031-816-1374 F.031-816-7399)

- 분당차병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13521)
T.031-708-1375 F.031-708-1355

9) 강원도

- 강원서부 : 강원대병원 :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24289) T. 033-252-1375 F.033-254-1376
- 강원동부 : 강릉동인병원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25478) T. 033-652-9840 F.033-652-9839
- 강원남부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원 원주시일산동 162-3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문창모기념관 4층) T. 033-741-1896(1899)0 F.033-741-1899

10) 충청도

- 청주의료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48 청주의료원 (28547)
T. 043-272-7117 F.043-268-7117
- 건국대 충주병원 :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교현동, 보성빌딩 4층) (27377)
T. 043-857-1375 F.043-857-1380
- 단국대병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31116)
T. 041-567-7117 F.041-522-8117)

11) 전라도

- 전북대병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
(54907) T. 063-278-0117 F.063-278-2117
- 전북대병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백크빌딩 2층 (54906)
T. 063-246-1375 F.063-247-1377

- 원광대학교병원 :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병원(54538)
T. 063-859-1375 F.063-859-1353
- 전남동부 : 성가롤로병원 :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롤로병원 별관 (57931)
T. 061-727-0117 F.061-727-9024
- 전남서부 : 목포중앙병원 :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별관5층 (58615)
T. 061-285-1375 F.061-285-1376

12) 경상도

- 경북동부 : 포항성모병원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성루가관
지하 3층(37661) T. 054-278-1375 F.054-278-1350
- 경북북부 : 안동의료원 :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36694)
T. 054-843-1117 F.054-843-6117
- 경북서부 : 김천제일병원 : 경북 김천시 신읍1길12 (39544)
T. 054-439-9600 F.054-439-8700)
- 경남서부 : 경상대병원 :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52727) T. 055-754-1375 F.055-754-1378
- 마산의료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지하 1층 (51264)
T. 055-245-8117 F.055-244-3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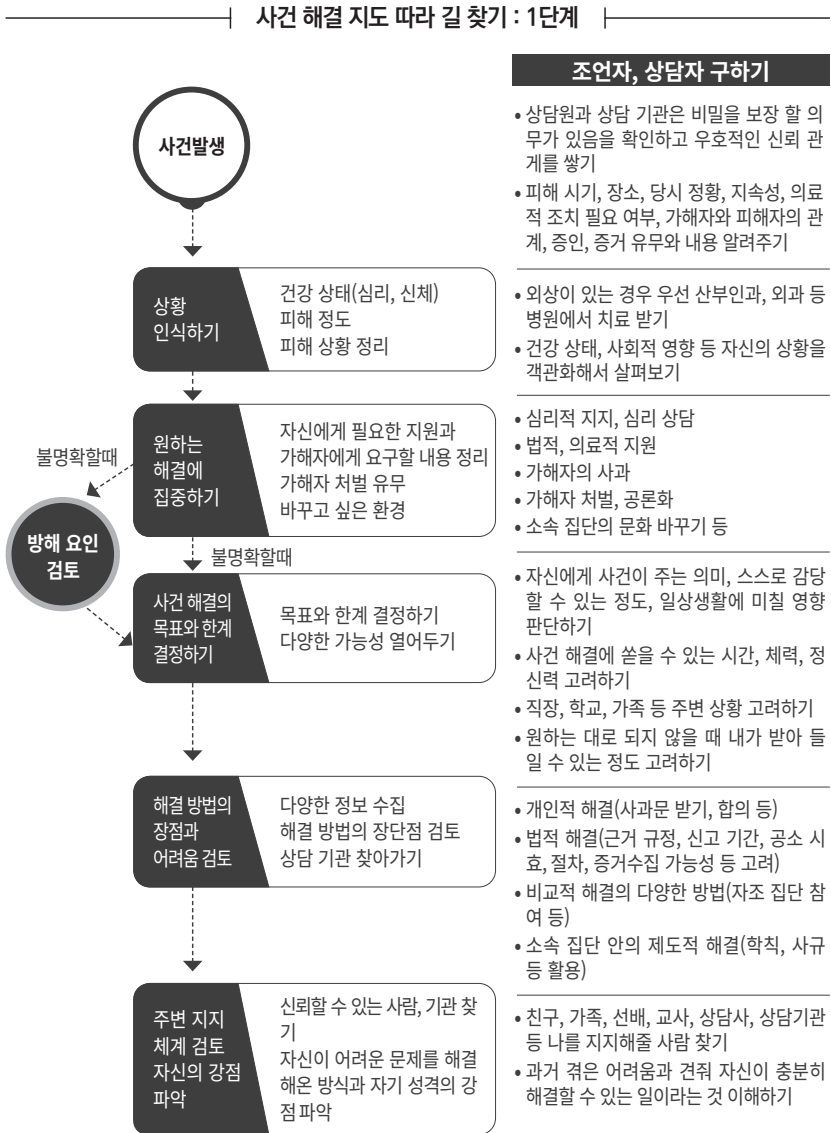
13) 제주도

- 한라병원 : 본관 :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2층(연동, 한라병원)(63127)
T. 064-749-5117 F.064-749-6117
별관 : 제주 제주시 남녕로 5-3 3층 (63098)
T. 064-748-5117 F.064-748-5117

4.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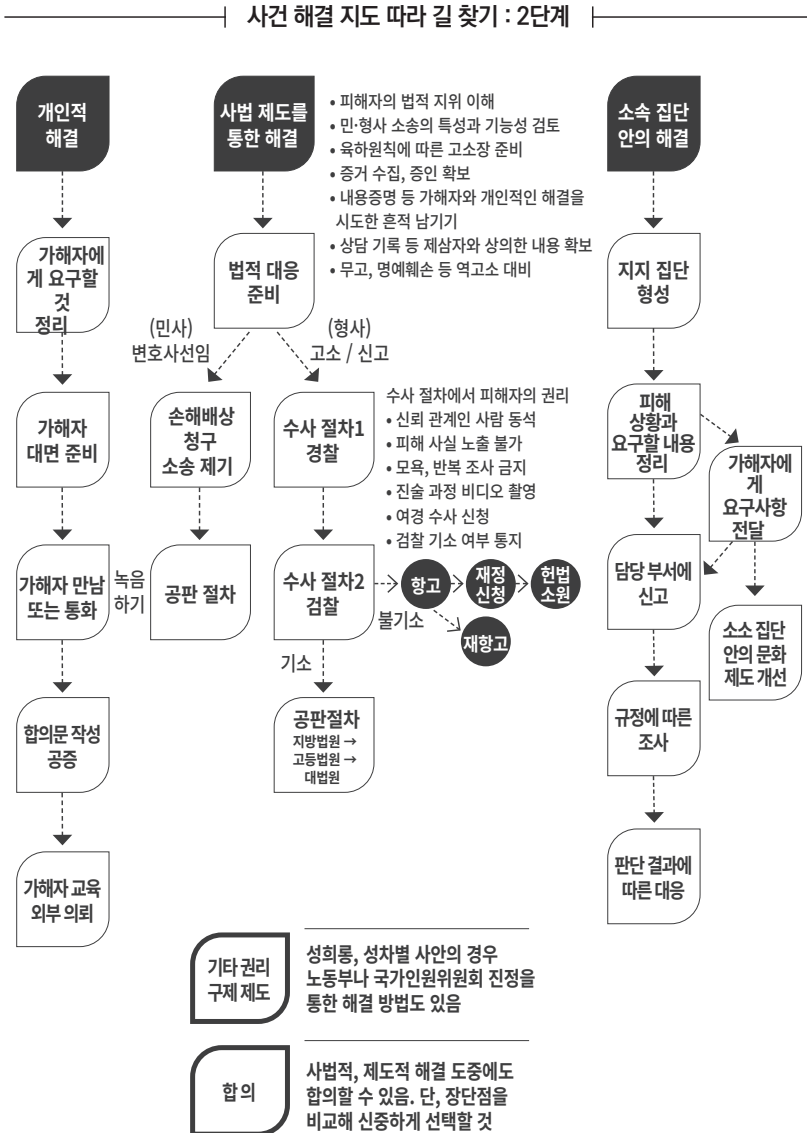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2018.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 기독교위드유센터, 2018.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2018.
- 기독교반성폭력센터·뉴스앤조이 지음, 「미투 처치투 위드유 교회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지침북」, 2018.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생명다리 이어가기 - 성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서」, 2015.
- 임정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젠더 감수성 교육' 시 자료 3, 2019.
- 임정혁,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제별 대응 지침라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젠더 감수성 교육' 시 자료 4, 2019.

[그림 1. 『감리회 성폭력예방 지침서』 (2018, 기감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80쪽]⁹⁾



9) 출처 :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에서 재인용

[그림 2. 『감리회 성폭력예방 지침서』 (2018, 기감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81쪽]¹⁰⁾



10) 출처 :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에서 재인용

[별지 1]

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

성 명 (가명가능)			소속 교회		
신청자와의 관계	① 본인 ② 동료 ③ 보호자 () ④ 대리인 () ⑤ 기타 ()				
연 락 처	집	—	—	휴대폰	— —
주 소					
사건을 알게 된 경위 (피해·가해 당사자일 경우는 제외)					
사건 내용	① 누 가				
	② 언 제				
	③ 어디서				
	④ 무엇을 / 어떻게				
	⑤ 요청사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					
기 타	(증거자료 있을 시 기재 등)				

[별지 2]

성폭력 사건 접수 보고서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노회/총회에 보고합니다.						
1	접수일자			2	보고일자	
3	피해 접수인	성명 (가명)		교회		직분
4	행위자	성명		교회		직분
5	사안 유형					
6	사건 내용 (간단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청사안				
7	현재 상태 (신체, 심리, 정서)	피해 접수인				
		행위자				
8	기타					
9	담당자					서명

[별지 3]

증인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건 담당 위원만 확인할 것입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소속 교회		직분	
2	사건 확인	누가 (관련자 모두 기입)				
		언제	① 첫 발생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경 ② _____개월 간 _____번 정도			
		어디서				
		무엇을 / 어떻게				
		왜				
3	증인(모두)					
4	기타					

[별지 4]

성폭력대책위원회 협의록

협의 일시	년 월 일 (시작 시각 : - 종료 시각 :)	
참석 위원		
협의 주제		
협의 내용		
확인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날인)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별지 5]

성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성 평등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윤리 강령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강령은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도, 기관과 유관 기관의 모든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지킵겠습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양하면서도 동등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며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2. 우리는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평등한 그리스도공동체를 이루어가겠습니다.
3. 우리는 나이나 지위,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피해를 주지 않고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는 칭찬이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수치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우리는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게 상담을 연결하고, 비밀보장, 치료와 돌봄,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나 신체, 정신,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은 더욱 엄중히 다루겠습니다.
7.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있는 교회공동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잘 돌보겠습니다.
8.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회개하게 하여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9. 우리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학부, 신대원, 인턴쉽, 각 노회와 교회)

10. 이를 위해 우리는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교회 성폭력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성 평등의 실현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이러한 은총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노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위와 같이 성윤리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사인)

성 평등 지침서 ❷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19

인 쇄 2019년 9월 16일

발 행 2019년 9월 16일

펴낸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양성평등위원회

펴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발행인 이재천 총무

디자인·인쇄 이노에이티브디자인 02-2269-0571

주 소 03129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관 4층

전 화 02-3499-7600

팩 스 02-3499-7630

이메일 prok3000@hanmail.net

홈페이지 www.prok.org